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8.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체계 및 광역교통계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5. 4. 22. 공포, '25. 10. 23. 시행)됨에 따라, 대도시권의 범위, 광역교통 개선대책 갈등조정 및 도로사업 관련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주와 김제·완주·익산·군산을 포함토록 조정
(안 별표 1)
-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갈등조정에 대한 행정절차 신설(안 제9조의3)
- 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도로사업의 대상 및 관련 행정절차 규정(안 제9조의4부터 제9조의10까지)
- 라. 도로사업계획 접수·승인, 주민의견 청취 등의 업무를 관할 지방

국토관리청장에 위임(안 제1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5.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시·도”를 “시·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를 각각 제9조의11부터 제9조의17까지로 하고, 제9조의3부터 제9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조정 등) ①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의견을 달리하는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신속히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당사자들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각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조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사실을 각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0조의2를 따른다.

제9조의4(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대상) 법 제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도로사업
2. 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안 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사업
3. 인·허가권자가 둘 이상인 경우 도로사업
4.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도로사업

제9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신청 등) 법 제7조의7제2

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9조제3항제5호의3에 따른 연도별 자원 투자계획
2. 제9조의4 각 호에 따른 도로사업 해당 여부
3.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 도로사업의 추진 현황
4. 법 제7조의8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5. 법 제7조의10에 따라 도로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로서 설치한 도로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제9조의6(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의7제3항에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절차를 모두 생략한다.

1. 도로의 명칭 변경
2. 도로사업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3. 도로사업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4.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5. 도로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6. 도로사업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9조의7(도로사업의 공고) 법 제7조의7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 시행기간
6. 공사 목적 및 사유
7.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등에 필요한 서류
8. 관계 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방법

제9조의8(주민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7제3항제2호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법 제7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로사업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9(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법 제7조의7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로사업 목적
2. 도로의 종류
3. 도로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 길이
4. 도로사업 시행기간
5. 열람 기간 및 장소

제9조의10(도로사업의 준공검사)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의11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설계도면
3. 비용정산서
4. 법 제7조의10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토지 소유자별 지번 및 면적 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도로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사업 시행지의 전체 면적

5. 준공일

제9조의12(중전의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중전의 제9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6제1항”을 각각 “법 제7조의1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조의8”을 “법 제7조의14”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6제2항”을 “법 제7조의1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6제3항”을 “법 제7조의1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6제4항”을 “법 제7조의12제4항”으로 한다.

제9조의13(중전의 제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7제1항”을 “법 제7조의1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7제2항”을 “법 제7조의13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14(중전의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8제1항제7호”를 “법 제7조의14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8제3항”을 각각 “법 제7조의14제3항”으로 한다.

제9조의15(중전의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10제1항”을 “법 제7조의16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도”를 “시·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10제5항”을 “법 제7조의16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조의10제1항”을 “법 제7조의16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16(중전의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10제1항제4호”를 “법 제7조의16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10제2항”을 “법 제7조의16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17(중전의 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조의11제1항”을 각각 “법 제7조의17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11제2항제3호”를 “법 제7조의17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11제8항”을 “법 제7조의17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7조의11제4항”을 “법 제7조의17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7조의11제3항”을 “법 제7조의17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제7호”를 “법 제8조제2항제9호”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법 제8조제2항제6호”를 “법 제8조제2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8조제2항제6호가목”을 “법 제8조제2항제8호가목”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권역별 위원회(이하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 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광역교통에”를 “광역교통 및 갈등조정에”로 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4(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
2. 법 제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위원 중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제11조의5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9.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19조의 제목“(업무의 위탁)”을“(업무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법 제7조의6제1항”을 “법 제7조의1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법 제7조의8제1항”을 “법 제7조의14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

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법 제7조의7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행 상황의 검토, 개선의 권고 및 시정의 요청
2. 법 제7조의7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3. 법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제출된 도로사업 계획의 접수, 제3항제2호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제9조의8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및 제4항에 따른 의견 접수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요청
4. 법 제7조의7제5항에 따른 관보 고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5. 법 제7조의8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접수
6. 법 제7조의11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사서 교부 및 관보 공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권역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원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전 주 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완주군·익산시· 군산시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 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 또는 도지사</u> (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 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 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 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제4조(광역철도) ① ----- ----- ----- ----- -----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u> ----- ----- ----- ----- -----.
1.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u> (이하 “시·도”라 한 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 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 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 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 도 또는 철도일 것	1.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u> (이하 “시· 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 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 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 소재대도시”-----
2.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 법 제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 -----

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②·③ (생략)

<신설>

----- 시·도 및 도청소재대도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3(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조정 등) ①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의견을 달리하는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신속히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당사자들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 받은 각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

<신 설>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조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사실을 각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0조의2를 따른다.

제9조의4(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대상) 법 제7조의7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도로사업
2. 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안 또는

<신 설>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사
업

3. 인·허가권자가 둘 이상인
경우 도로사업

4.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신속한 추진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사업

제9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
른 도로사업 신청 등) 법 제7조
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9조제3항제5호의3에 따른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2. 제9조의4 각 호에 따른 도로
사업 해당 여부

3.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
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
도로사업의 추진 현황

4. 법 제7조의8에 따른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
한 서류

5. 법 제7조의10에 따라 도로사
업시행자가 공공시설로서 설
치한 도로의 명세서 및 처분

<신 설>

<신 설>

계획서

제9조의6(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의7제3항에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절차를 모두 생략한다.

1. 도로의 명칭 변경
2. 도로사업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3. 도로사업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4.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5. 도로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6. 도로사업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9조의7(도로사업의 공고) 법 제

7조의7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신 설>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 시행기간

6. 공사 목적 및 사유

7.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등에 필요한 서류

8. 관계 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방법

제9조의8(주민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7제3항제2호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법 제7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

<신 설>

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로사업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9(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법 제7조의7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로사업 목적
2. 도로의 종류
3. 도로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길이
4. 도로사업 시행기간
5. 열람 기간 및 장소

<신 설>

제9조의3 (생 략)

제9조의4(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9조의10(도로사업의 준공검사)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의11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설계도면

3. 비용정산서

4. 법 제7조의10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토지 소유자별 지번 및 면적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도로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사업 시행지의 전체 면적

5. 준공일

제9조의11 (현행 제9조의3과 같음)

제9조의12(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의 지정 기준·절차 등)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1. 2. (생략)

②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5. 법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의 개요

6.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의 지정 기준·절차 등) ① 법 제7조의12제1항-----

1. 2.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7조의12제1항-----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7조의14-----

6. (현행과 같음)

③ -----

----- 법 제7조의12제2항-----

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 5. (생략)

④·⑤ (생략)

⑥ 법 제7조의6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⑦ 법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제9조의5(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법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1. ~ 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7조의12제3항 -----

-----.

1.·2. (현행과 같음)

⑦ 법 제7조의12제4항-----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의13(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① ----- 법 제7조의13제1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의13제2항-----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제9조의6(특별대책의 수립·시행)

① 법 제7조의8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8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대책을 통보받으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의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⑤ (생략)

제9조의7(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의14(특별대책의 수립·시행)

① 법 제7조의14제1항제7호

-----.

1.·2.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7조의14제3항-----

-----.

③ ----- 법 제7조의14제3항 -----

-----.

④ 법 제7조의14제3항 -----

-----.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15(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

은 법 제7조의10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교통축(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할 수 있
다.

1.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
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도
로 또는 도시철도·철도를 통
해 대도시권에서 광역적인 교
통 수요를 처리하는 교통축일
것

2. (생략)

② 법 제7조의10제5항에서 “광
역교통축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이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이라
한다) 사업이 완료된 경우

2. (생략)

③ (생략)

제9조의8(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

-- 법 제7조의16제1항-----

1. ----- 시·도 및 도청소
재대도시-----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의16제5항-----

1. 법 제7조의16제1항-----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16(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

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의1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략)

② 법 제7조의10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9조의9(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 또는 공고하는 사업일 것

2. ~ 4. (생략)

② 법 제7조의11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의16제1항제4호-----

-----.

1. ~ 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의16제2항 -----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17(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17제1항 -

-----.

1. 법 제7조의17제1항 -----

--

2.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의17제2항제3호 ---

다.

1. ~ 3. (생략)

③ 법 제7조의11제8항에서 “환승편의성의 저하, 환승역의 추가 신설, 삭제 또는 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1제4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로서 기술적·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7조의11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조의17제8항-----

-----.

1. ~ 3. (현행과 같음)

④ ----- 법 제7조의17제4항-----

-----.

⑤ ----- 법 제7조의17제3항 -----

-----.

⑥ (생 략)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제10조의2(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절차 등) ① 광역교통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은 법 제8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을 광역교통위원회에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조정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알리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법 제8조제2항제9호-----

-----.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절차 등) ① -----

----- 법 제8조제2항제8호 -----

-----.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8조제2항제8호가목 -----

-----.

-----.

④·⑤ (생략)

제11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이하 “권역별 위원회”라 한다)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2. (생략)

②·③ (생략)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2. (생략)

3. 교통·도시계획·재정·행정·환경 등 광역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사람

⑤·⑥ (생략)

제11조의4(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①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1. -----
----- 분과위원회
(이하 “분과위원회”-----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2. (현행과 같음)

3. -----
----- 광역교통 및 갈등조정
정에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안전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의5(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⑤ (생략)

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1. ~ 7. (생략)

<신설>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

2. 법 제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위원 중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제11조의5(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

----- 분과위원회 -----

-----.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 7. (현행과 같음)

8.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

<신 설>

<신 설>

⑦・⑧ (생 략)

제19조(업무의 위탁) <신 설>

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9.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⑦・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법 제7조의7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행 상황의 검토, 개선의 권고 및 시정의 요청

2. 법 제7조의7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

인

3. 법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제출된 도로사업 계획의 접수, 제3항제2호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제9조의8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및 제4항에 따른 의견 접수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요청

4. 법 제7조의7제5항에 따른 관보 고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5. 법 제7조의8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접수

6. 법 제7조의11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사서 교부 및 관보 공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②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1.·2. (생략) 3. <u>법 제7조의6제1항</u>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4. <u>법 제7조의8제1항</u> 및 제2항에 따라 수립·제출된 특별대책 검토	----- ----- -----. 1.·2. (현행과 같음) 3. <u>법 제7조의12제1항</u>----- ----- ----- 4. <u>법 제7조의14제1항</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5048